제주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개인기부 확대방안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장 훈 철**

Ⅰ. 서 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 성과에 관하여는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경제적 관점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균형 잡힌 발전으로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국제자유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정착이다. 국제자유도시의 선진 모델이 되고 있는 도시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에서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결과로 발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제발전과 병행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화예술이 도시의 발전을 선도하기도 한다. 그런 만큼 도시발전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은 중요하고 지방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분야이기도 하다.

공공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집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하는데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띤다. 문화예술도 일종의 준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여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되기가 어렵다. 이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정당성의 논리다(민태욱, 2008: 81-82).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국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지원은 재정지원이다.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직접지원, 기금재단을 통한 지원, 공공단체인 예술위원회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하지만 어느 방식이든지 민간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공통된 부분이다. 민간부문의 활동은 기부라는 민간의 자발적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민간기부는 크게 재단, 기업, 개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개인의 기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많고, 기업의 기부는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추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재단 또한 개인의 기부가 집합된 형태라고 보면 결국 민간기부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부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기부는 주로 사회복지와 세무의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었고, 기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 문화예술을 위한 기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독자적인 기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미 논의된 기부 활성화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특별법이라는 유리한 도구를 가지고 있

다. 제주의 특성을 살린 기부 활성화 방안에서 이러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특별법이라는 수단을 전제로 민간기부 확대에 관한 기존 논의를 원용하여 제주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개인기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제주지역 문화예술의 개인기부 현황

1. 제주지역 개인 기부금 지출 현황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부에 관한 통계자료는 매우 희박하고 정확성도 떨어진다. 실증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 정도인데 이마저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기부금에 관한 것이므로 정확한 기부금의 규모를 알 수 없고 단지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제주지역에서 개인이 기부금 공제를 받은 인원과 공제액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 개인 기부금 현황의 특징은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1인당 기부금액이 전국 평균 대비 각 72%, 56%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점이다.

<표 1> 2009년 기부금 공제 인원 및 기부금 공제액

구분	기부금 공제 인원 (명)	기부금 공제액 (백만원)	1인당 기부금 공제액(만원)	
			제주	전국 평균
종합소득자	4,403	7,514	171	239
근로소득자	28,949	19,691	68	121
합계	33,352	27,205	-	

자료 :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발표자가 구성

2. 제주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 기부금 지출 비중

제주지역 개인기부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세무당국의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사)볼런티어21'가 행한 것이 있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의 설문조사는 종교단체에 대한 순수 종교적 헌금을 포함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개인기부에서 문화예술에 지출되는 것은 대략 2%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로 Inkei(2001)는

국제적으로 민간기부의 10%가 문화로 유입된다고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01년 미국 비영리단체에 기부된 총 2,120억달러 중 5.7%인 121.4억달러가 문화・예술・인문분야에 투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chuster, 2006: 1266). 'Giving USA 2007'에 따르면 미국은 4.8%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기부의 역사가 짧고 그마저도 종교와 자선단체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민간기부에서 문화예술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도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개인 기부금 지출 비중

설문조사기관	조사시기(년)	대상(명)	기부분야	전체대비 구성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0	1,758	문화 및 예술단체	0.05
(사)볼런티어21	2002	1,512	예술, 문화, 스포츠단체	2.2
	2005	1,611	〃	1.7

비고 - 대상에서 제주 제외

3. 제주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 기부금액

<표 1>과 <표 2>를 통하여 제주지역 개인기부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금액을 개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표 1>의 기부금 수혜자는 제주지역에 한정되지 않지만 적어도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의 수혜자는 모두 제주지역이라고 하자. <표 2>는 분야별 기부에 대한 전국적 수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그 비중은 전국평균과 유사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액은 <표 3>과 같다.

<표 3> 제주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 기부금액

전체 기부금 공제액(백만원)	문화예술분야 기부액(백만원)
27,205	544.1(= 27,205 × 2/100)

4.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현황

1) 개요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0년까지 조성실적은 136.7억원으로 계획대비 45.5%에 머물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하여 직접보조방식 대신 조세정책을 통한 간접

보조방식이 선호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Schuster, 2006: 1270-1271). 첫째, 문화예술기금 모금을 결정하는데 간접보조방식은 넓은 범위의 개인들이 분권화된 결정을 함으로써 소수의 집단이 결정하는 방식보다 의사결정 메커니즘에서 우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둘째, 경제적 효율성이다. 기부금은 정부가 포기한 손실세금이 전환된 형태다. 그러나 포기된 세금의 손실분인 비용보다 기부를 통한 공공편익이 증가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한 셈이다.

2) 운용현황

이미 조성된 136.7억원을 출연주체별로 분류하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가 12,955,763천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119,237천원, 민간출연 599,200원으로 민간출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8%에 불과하다.

<표 4> 주체별 출연현황

(2010. 12. 31. 현재)

출연주체	출연액(천원)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12,955,763	94.75
제주문화예술재단	119,237	0.87
민간	599,200	4.38
합계	13,674,200	100.00

자료 : 제주문화예술재단 내부자료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표 5>의 민간출연 중에서 개인출연 부분이다. 민간출연은 기업, 단체, 개인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현재 민간이 출연한 599,200천원은 주로 은행권 등 기업이 출연한 것으로 순수 개인출연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 5> 민간출연금 현황

(2010. 12. 31. 현재)

출연주체	출연액(천원)	비율(%)
은행 등 금융기관	580,000	96.80
기업	10,000	1.67
순수 개인	9,200	1.53
합계	599,200	100.00

자료 : 제주문화예술재단 내부자료

Ⅲ. 제주지역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개인기부 확대방안

1. 지방세를 통한 세제 혜택 부여

1) 개인 기부금 관련 세제 개요

개인이 문화예술분야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거나,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건물, 금융자산 등의 운용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수익을 문화체육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일정부분 비과세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 기부금 관련 세제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는 대부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표 6> 우리나라 개인기부 관련 세제 개요

종류	공제대상 및 기부금단체	비용한도
법정기부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미혼모 등), 정신질환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⑥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⑦ 사립학교, 일정한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일정한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⑨ 대한적십자사 ⑩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100%
특례기부금	① 독립기념관 ②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한국교육방송공사 ⑤ 한국국제교류재단	50%/30%

종류	공제대상 및 기부금단체	비용한도
	⑥ 결식아동 결식해소 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⑦ 공익법인신탁기부금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신탁 법인 ⑨ 박물관 또는 미술관 ⑩ 국제행사조직위원회(2012여수세계박람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정기부금	①「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각호의 기부금 - 관련법 및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의료법인) - 공익성기부금단체(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다음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기능대학, 원격대학)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법인세법 규칙18조 열거)	10%

자료 : 국세청(2010), 「기부금 소득공제 해설」, 10-11

2) 기부의 가격탄력성

간접보조방식이 효율적인 경우란 기부가격의 변화율보다 기부량의 변화율이 큰 경우, 즉 기부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다. 기부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정부가 세금보조율을 높여 기부가격을 하락시켰을 때 그 변화의 정도보다 기부량이 크다는 것이고 이는 조세감면정책으로 정부가 포기하는 세금의 손실보다 실제 혜택을 받는 부문으로 유입되는 수입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부확대를 위한 지방조세정책에서 세금보조율은 기부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컸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직접보조방식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기부의 가격탄력성은 경험적 자료로서 미국의 경우 1보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1보다는 크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Schuster, 2006: 1272-1273). 우리나라에서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한 실증연구는 박기백(2010)이 유일해 보이는데 2007년 재정패널 서베이 자료를 활용해 근로소득자의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연구한 결과 0.564로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탄력성만을 놓고 보면 기부금공제에 의한 세수감소액보다 기부금의 증가가 낮아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 기부에 관한 것으로 문화예술만을 분리하여 얻은 자료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기부는 종교와 자선 분야에 집중되는데 이 두 분야는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비탄력적인 분야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문화예술만에 대한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해보면 상당히 탄력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비효율이라 하더라도 조세감면정책이 선호되는 것은 다른 한 가지 장점인 의사결정 메커니즘 때문이다. 기부금공제방식은 정치적 다수자의 선호와 관계없이 개별 납세자가 원하는 단체 및 활동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직접지원으로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다양한 소수자단체가 보호되고 문화예술의 다양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민태욱, 2008: 83-84).

3) 구인 또는 구축효과

정부의 보조정책은 기부에서 구축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1989년의 미국 박물관 연합의 미출간 자료를 이용하여 기금재원과 역사박물관의 관계를 고찰한 Hughes와 Luksetich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기에는 정부 지원에 따라 구인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는 구축효과의 전조증상일 뿐 특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구축현상이 시작된다(Schuster, 2006: 1284-1285).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문화가 정착되는 시기라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지방비의 투입을 최소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운영 관행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부를 억제하려는 개인의 심리가 반영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관찰할 수 있다.

4) 지방세를 이용한 조세정책

(1) 조세설계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부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조세정책을 설계해보면 기부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은 국세인 소득세와 연동되는 지방세에서 기부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인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조세감면액 = 조세손실액 = 문화예술 기부금 × α (α는 조세감면비율)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1보다 크게 하는 세금보조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 또한 구축효과가 일어나는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운용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기부의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조세감면정책이 효과적이지만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장점까지도 고려하여 직접지원방식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보조의 정도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기 바로 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자산운용결과와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사업운용결과를 잘 조화시켜 기부자들이 기부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2) 조세감면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목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기본법」상의 도세와 시·군세를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제주특별법 제72조). 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을 구분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

구 분	보통세	목적세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료 :「제주자치도세 기본조례」제4조를 표로 구성

이 중 소득세와 연관되는 것은 보통세인 지방소득세다. 따라서 기부에 대한 조세감면을 지방세 차원에서 검토한다면 지방소득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제86조).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지방세법」제85조).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소득세분은 소득세액의 10/100이고,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의 10/10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위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제89조). 따라서 개인 기부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에서 일정금액을 법정범위에서 감하는 것은 법률개정 없이 조례를 통하여 가능하다.

문제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국세인 소득세에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은 후 다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은 하나의 기부행위로 국세와 지방세 두 가지의 감면을 받는 것이므로 중복혜택이 되어 조세감면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는 미미하고 지방의 세입만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부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액보조금의 범위가 법정되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의 과세일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크게 불균일한 과세로 여겨지지 않는다.

2. 전문모금기관 양성

1) 개요

기부에서 전문모금기관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전문모금기관을 두게 되면 이들 기관 위주로 기부가 실행되어 특권의식에 빠져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에 대한 현재의 개인기부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오히려 기부의 필요성과 절차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홍보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를 가진 기관이어야 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전문모금기관으로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중앙정부 위주의 문화예술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문화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전국에 문화재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01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문화예술 정보 교류,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등이다(「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3조). 육성기금과는 별개로 2011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과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육성기금 적립이 220백만원, 제주사랑티켓사업에 30백만원, 지역협력형사업에 705백만원,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150백만원 등으로 합계 1,105백만원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전문모금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신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79조는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에 규정되어 있다. 특별법 제222조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발현된 전통문화를 관광산업의 장점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를 접목한 지역밀착형 관광산업을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향토문화예술을 진흥시킨다는 것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즉 문화예술이 주민의 실생활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육성기금에 대한 기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세감면 등 세금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제주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체와 객체가 일치되어 적극적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제주 고유의 향토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3. 문화예술분야 자원봉사의 기부인정

손원익・박태규(2008)의 연구에 따르면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 외에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원봉사 경험을 꼽고 있다.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문화예술에 유추해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는 문화예술을 접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증가할 것이다.

문화예술분야는 단순 자원봉사 외에 예술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야다. <표 6>의 법정기부금 항목을 보면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문화예술분야에 응용해보면 문화예술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기부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부금의 인정범위는 재난지역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료비나 장비사용료와 같은 직접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 론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기부의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전문모금기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제지원방안을 살펴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의 기부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정책을 통하여 활성화하려면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1보다 크게 하고 구축효과를 억제하는 적정 세금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방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득세법과 연계되어 있는 지방소득세가 적합하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상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기부문화가 덜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기부와 조세정책과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여 연구결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 통계도 전체 기부에 대한 조세통계만을 다룰 뿐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된 기초자료가 없어 적정 세금보조율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연구자가 세법이나 세금구조설계에 지식이 일천하여 정밀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조세감면정책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만 한계가 있다.

앞으로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구하는 여러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 구축효과의 수준을 측정하는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어야 완성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고, 향토문화예술발전과 지방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이론적 뒷받침을 실무행정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세청(2010), 「국세통계연보」

_____(2010), 「기부금 소득공제 해설」

민태욱(2008), 소득공세의 논리와 평가, 「조세법 연구」14(3): 58-95

박기백(2010), 조세 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27(2): 143-158

손원익・박태규(2008),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제주문화예술재단(2011),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자료

J. M. Schuster(2006), *Tax Incentive in Cultural Policy,*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North-Holland, The Netherlands

P. Inkei(2001), *Tax Incentives for private support to culture*, Council of Europe Document DGIV/CULT/MOSAIC(2003)13

인터넷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공시시스템 https://npoinfo.nts.go.kr/ndp/index_dist.html

제주특별자치도통계연보 http://www.jeju.go.kr/contents/index.php?mid=01090511